

「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」 계속비사업 승인 안 심사보고

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2.7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2. 2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2. 2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70호)
- 다. 2004. 12. 7 :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)

가. 제안사유

-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6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

나. 계속비사업 승인 안

○ 목 적

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·적정 처리하여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함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
-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(계속비사업의 예산요구)

○ 사업개요

- 위 치 : 사천시 축동면 탑리100(구 축동분뇨처리장 내)
- 사업기간 : 2004. ~ 2006.
- 시행주체 : 사천시
- 총사업비 : 4,210백만원
- 시행방법 : 장기계속공사
- 사업량 : 시설용량 = 40 kl/일, 부대시설 1식

○ 추진현황

- 타당성조사 용역 : 2003. 6. 3 ~ 2003. 9. 10
-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: 2004. 9. 22 ~ 2005. 5. 21
- 설치인가 신청 : 2005. 6.
- 공사 착공 : 2005. 8.
- 공사 준공 : 2006. 12.

○ 사업비 : 4,210백만원(국비 3,254. 도비 114. 시비 842)

-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4년이전	2004년	2005년	2006년	비고
계	4,210	-	137	965	3,108	
국비	3,254	-	-	772	2,482	
도비	114	-	114	-	-	
시비	842	-	23	193	626	

○ 사업별 투자내역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비 고
합 계	4,210	
공 사 비	3,970	토목·조경, 건축, 기계, 전기·계장공사
보 상 비	-	
설계 및 부대비	240	

○ 계속사업 이유

-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6)를 요하는 사업으로
- 당해년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(3년)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기대할 수 없어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년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

- 사천시 축동면 탑리 100번지 상(구 축동분뇨처리장 내)에 4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0kl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
 -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.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·융자사업 심사 결과 승인과 국·도비의 지원을 받아 년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
 -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 의 요 지	답변자	답 변 요 지
진삼성 위 원	○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1일 40kl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해양 투기량은? ○시설 후 늘어나는 축산폐수 대책은? ○기존 축동면 소재 분뇨처리장 활용 시 기존시설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지?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○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해양 투기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 ○발생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의 자료에 의함.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에 의거 시설용량을 결정하여 시행함. 모든 처리절차는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어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40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. ○전부 교체해야함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 의 요 지	답변자	답 변 요 지
진삼성 위 원	○설치위치는 확정되었는지? 위치 변경시 사업비의 차이는? 또한 변경시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의향은?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○당초계획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 하였는데 용역기간 중 타시군의 설치사항을 견학한 결과 처리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음. 진사지방산업단지 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잔여부지에 설치하면 운영비, 유지관리비 슬러지 처리 등을 위한 운반비 등이 절감 될 것으로 생각함.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님. 또한 사업비는 기존 시설물 등의 철거를 감안하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하는 것이 저렴할 것으로 생각함. ○앞으로 용역결과 위치가 선정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음.
박종권 위 원	○1일 시설용량 40톤이라 하였는데 사천시 관내 1일 발생하는 축산폐수 발생량은? ○관내 발생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 처리 계획은?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○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정확한 폐수 발생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○40톤만 하면 처리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 의 요 지	답변자	답 변 요 지
박종권 위 원	○위치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구 축동분뇨처리장의 활용방안은? ○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는? ○공법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여론이 있음. 참여업체수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일자 연기사유는? 또한 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는데? ○기술심의위원의 구성방법은? ○공법선정과정에서 우리시의 역할은?	하 수 도 사업소장 천 병 기	○구 축동분뇨처리장의 용도를 폐지 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인계 예정이며, 차후 회계과에서 판단함. ○남원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음. ○공법선정에 응모한 업체수는 8개 업체로 용역회사의 자료정리관계로 연기되어 응모한 업체에 연기통보된 것임. 공법설명회는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용역회사의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하는데 동의하였으나 1개 업체가 불참하여 이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참업체에서 왜 공법설명회를 하지 않느냐는 이의 신청에 의거 연기하여 설명회를 개최토록 한 것임, ○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결정함. ○공법선정시나 기술심의위원회개최, 설명회시 우리시 관계자가 참관하고 공법이 결정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우리시에 보고하도록 함.

5. 토론요지

-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위치나 공법 등 최선의 방법확정 후 의회에 별도보고 토록하고 원안가결 의견

6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- ※ 조건 : 시설의 설치위치 및 공법 등의 결정은 투자비, 유지관리비, 사후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고 우리시의회에 보고

7. 소수의견 : 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계속비 사업조서(붙임참조)